



정보자원서비스 평가관리지침

규정번호	3-1-38
제정일자	2013.07.01
개정일자	
개정번호	Ver.0 총페이지 2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“본대학”이라 한다)의 종합정보지원실 운영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본대학의 효율적인 정보자원 공유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정보유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자원 이용 및 서비스평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“정보자원”이라 함은 캠퍼스망 연결 여부, 용도 및 소유와 관계없이 대학의 모든 컴퓨터, 네트워크 장비, 주변기기, 소프트웨어와 그 내용을 말한다.
- ② “서비스평가”는 대학 내 정보자원을 이용하는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행정부서의 행정 및 학사제공 서비스의 운영 전반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.

제3조(대상 및 영역) ① 평가대상은 본대학 정보자원 업무와 관련한 내용으로 한다.

② 평가 주요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홈페이지 웹접근성, 성능 및 구성
2. 정보서비스 및 환경
3. 기타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정한 사항

제4조(평가시기) 서비스 평가의 시기는 정보화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하고, 평가결과를 조사, 분석하여 차년도 예산 및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한다.

제5조(항목별 평가방법)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,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, 항목별 평가등급 등은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6조(자료 작성 및 실사) ① 평가 담당자는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평가에 관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

② 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자에 대해 실사를 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 구성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선임한다.

② 종합정보지원실장은 평가 주요영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